

의안번호	2219000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6.7.2.
추계번호	26D257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 제3항(변상금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1조 제3항(변상금의 징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수급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면제 관련(안 제81조 제3항)

- 현행법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 시행령²⁾은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인 경우 지방자

1) 현행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현행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으나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변상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
 - 최근 3년간(2023~2025년) 현행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유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부과(유예) 건수	금액	부과(유예) 건수	금액	부과(유예) 건수	금액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전국 합계)	23,939	70,674	22,384	45,477	23,467	54,049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전국 합계)	7	172	19	142	16	225

자료: 행정안전부

- 최근 3년간의 징수유예 현황 자료를 참고할 때,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징수 수입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과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유예 현황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개정안은 변상금 면제 대상을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면제 대상·범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